

노동자의 알 권리와 기업의 영업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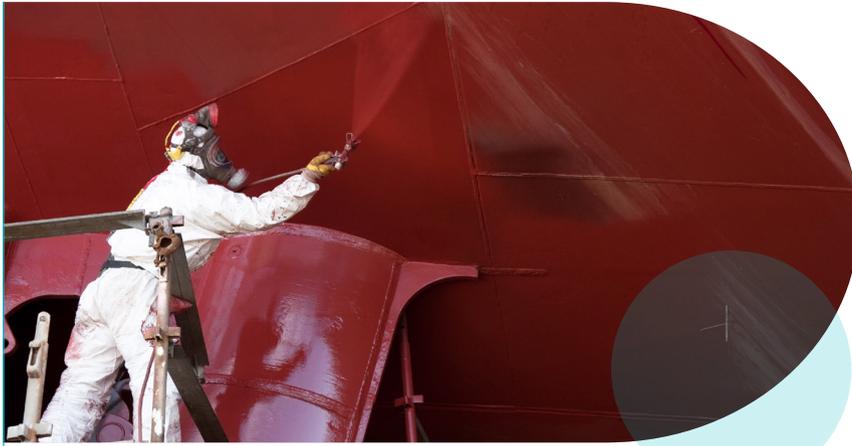
조기훈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실장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996년 7월 1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이하 MSDS)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에게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확한 유해·위험성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직업병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노동자의 알 권리를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지만 무슨 물질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다. MSDS가 비치·게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비치·게시는 되었으나 제대로 교육이 안 된 상태로 사용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MSDS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화학물질에 의한 노동자 피해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중공업 계열 조선소에서 지난해 선박에 페인트를 칠하는 노동자들에게 피부병



이 집단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 노동자에게 정확한 MSDS를 제공하고 교육을 했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회사는 사보를 통해 “피부 발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특정 성분을 확인했다”며 도료 교체 계획을 밝혔다. MSDS에 피부발진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과 예방대책이 포함되었지만 어느 누구도 이러한 정보를 정확히 취급 노동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내용이 MSDS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허위 작성한 것으로 MSDS 작성자에게 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몇 년 전 우리는 후진국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아니 후진국에서조차 발생하기 어려운 메탄올 중독에 의해 다수의 노동자가 실명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대기업 휴대전화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었다. 하청노동자들은 “아무도 우리에게 메탄올이 위험하다고 말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만약 이들 노동자에게 메탄올에 대한 MSDS를 제공하고 제대로 교육을 했다면 이런 끔찍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자의 알 권리가 철저히 짓밟힌 사례이다.

노동자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제도 개선

MSDS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써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응급조치 요령, 취급방법 등을 비롯한 16가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학물질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의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제도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에게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확한 유해·위험성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직업병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MSDS 대상물질이다. 정부는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정부가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MSDS 작성 주체 및 기재항목 등을 변경하고, 제출 의무 및 비공개 승인 조항 등이 신설돼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MSDS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담은 MSDS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영업비밀을 사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MSDS에 기재하지 않으려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는 대상 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는 자에게만 MSDS를 제공하고, MSDS의 구성성분 항목에 화학물질 명칭 등을 사업장에서 자의적으로 영업비밀로 판단해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노동자의 알 권리가 제약되고, 정부가 유통되는 화학물질 현황을 파악해 직업병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MSDS 영업비밀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MSDS 비공개 승인신청서 및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
2. 대체자료
3.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정보
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5.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6. 그 밖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도록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이처럼 노동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정부의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MSDS 제도에 대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일부 기업에서는 법 이행과 기업의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며 제도의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 중 대표적인 사례는 비공개 승인심사에서 영업비밀은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에서 mixture-in-mixture의 복잡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정부가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MSDS 작성 주체 및 기재항목 등을 변경하고, 제출 의무 및 비공개 승인 조항 등을 신설, 시행하고 있다.



즉, 수입하고자 하는 화학제품(제품A)에 원료로 사용되어 함유된 화학제품(단일물질 또는 혼합물 형태의 제품B)이 있는 경우 제품B의 전체 성분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제품A의 국내 수입이 불가능하여 현재 업계에서는 신규 원료를 함유하는 제품개발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이로 인해 기업의 영업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상세한 대체물질 총칭명 규정으로 인해 첨단물질 도입이 늦어지거나 경쟁업체에서 물질을 유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업비밀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어 회사의 기밀유지와 영업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4월 7일 자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심사제도’가 시작된 올해 1월 16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신규로 제출된 MSDS는 8,722건이다. 이 중 영업비밀로 노동부 사전심사를 신청한 것은 135건으로 전체의 1.54%에 그쳤으며, 그동안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MSDS상 물질 다수를 공개하지 않았고 같은 이유에서 사전승인 신청 제도 도입도 반대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영업비밀이어서 공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신청한 물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기업들이 실질적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것까지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언급하고 있다.

개정된 MSDS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기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확대 해석해서 기업의 요구를 수용, 제도개선을 당장 하기는 이르다고 판단된다. 개정된 MSDS 제도가 기업의 이익이

산업보건환경
연구원은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승인제도의
안착 및 발전을 위해
기업 및 노사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제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아닌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정부의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목적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업비밀 공개로 인한 과도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보건환경연구원은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승인 제도의 안착 및 발전을 위해 기업 및 노사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제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원에서는 MSDS를 제출하거나 비공개 승인 신청과 관련한 이해당사자(제조·수입업체 및 노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



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 심사제도 의견수렴

(사)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위탁연구용역 과제인

「MSDS 제출 및 비공개 승인 심사제도 발전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MSDS를 제출하거나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하시는
이해당사자 (제조·수입업체 및 노사)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출기한

-2021년 9월 1일 ~ 9월 30일까지

※문의 :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

02-3284-5251~4

